「기금운용심의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9. 5. 13. 개정 판 (시행 2019. 5. 13.) → 2018. 11. 19. 제정 판 (시행 2018. 10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373/compare?from=1137&to=887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8:15:58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령에 의거 삼육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9-05-13〉	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령에 의거 삼육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〈개정 2019-05-13〉 1.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.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 1.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.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3조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9-05-13〉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〈개정 2019-05-13〉 ③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,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	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③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,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제5조(회의)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정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. 〈신설 2019-05-13〉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단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,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,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9-05-13〉	**제5조(회의)**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